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우리가 당면한 4차산업혁명 시대는 누구나 정보생산자가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정보는 각종 SNS 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공론(公論)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며,
- 각종 기후위기, 인구위기 등 변화와 위기가 몰려오고, 도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요 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역 생존에 직결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염중한 때입니다.
- 지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끌어모아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.
- 이에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대해 범구민적 차원의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 정책 추진에 원동력으로 삼고자 「미래발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, 안 제2조는 구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주민여론 파악 및 의견수렴 등의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다음,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, 안 제4조

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구청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하였습니다.

- 다음,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, 안 제6조는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다음, 안 제7조는 회의 운영, 안 제8조는 위원들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다음,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와 공청회,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4월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미래발전 전략 및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범구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어,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045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4. 5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, 인구위기 등 변화와 위기가 몰려오고, 도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구민의견 반영 여부가 정책 성공에 직결됨에 따라,
- 나.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범구민적 차원의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 정책 추진에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: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 등

- 구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
- 구정 주요정책 홍보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
- 구정 주요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및 범구민적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
- 두류공원 대개조 및 대구 백년대계를 바라볼 랜드마크적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제안
- 기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
-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
마.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
바. 포럼 시행 및 경비지원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24. 3. 4. ~ 3. 25.) 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 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대구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도시경쟁력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범구민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발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구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건의·제안할 수 있다.

1. 구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
2. 구정 주요정책 홍보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
3. 구정 주요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및 범구민적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
4. 두류공원 대개조 및 대구 백년대계를 바라볼 랜드마크적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제안
5. 기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

구성한다.

-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사회단체, 학계 및 산업계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사회 전반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. 단, 구청장이 직무수행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동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2. 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럼, 공청회(이하 “포럼 등”이라 한다)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

제11조(포럼 등의 지원)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포럼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[시행 2023. 12. 14.] [대통령령 제33966호, 2023. 12. 14., 일부개정]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